

서울특별시 DMC 단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669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년 8월 11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DMC(Digital Media City) 단지관리 사무는 DMC 단지에 설치한 선도시설, 홍보관, DMS(Digital Media Street) 등 시설의 관리와 미공급용지 시설관리, 지정용도 준수 이행실태 조사 등 단지관리를 위한 사무를 내용으로 하여, 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조례 제12조(입주자 지원사업),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등에 의하여 DMC 단지 조성 초기부터 (재)서울산업진흥원에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인 사무임.
- 나. 입주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선도시설(DMC 첨단산업센터, DMC 산학협력연구센터),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를 체험하는 홍보관과 DMS 시설관리 사무는 그 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중소기업 지원 노하우가 요구되므로, 중소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설립된 서울산업진흥원에 DMC 단지관리 사무를 위탁하여 왔음.
- 다. 2021년 12월 31일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어, 위탁 사무에 대한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,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서울산업진흥원과 재계약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관리 시설개요

○ DMC첨단산업센터

소재지	마포구 상암동 1580
시설규모	지하2/지상8, 총면적 77,191㎡
준공일	'08. 3. 31.
입주대상	중소기업, 서울시전략지원기관 등
입주기간	2년(심사를 통해 2회 연장가능)
입주기업	108개 기관 및 기업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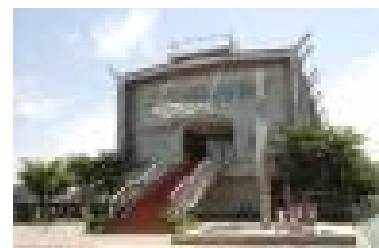
○ DMC산학협력연구센터

소재지	마포구 상암동 1649
시설규모	지하4/지상15, 총면적 29,760㎡
준공일	'06. 8. 18.
입주대상	기업 및 대학연구소
입주기간	2년(심사를 통해 2회 연장가능)
입주기업	기업 23, 대학연구소 9, 기관 2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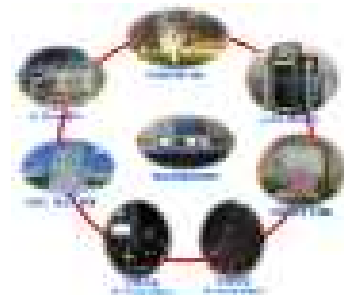
○ DMC홍보관

소재지	마포구 상암동 1612
시설규모	지상3, 총면적 1,715㎡
준공일	'02.10.31
방문실적	-2019년 : 21,959명 -2020년도 휴관(코로나19 및 리모델링) -2021년 7월 현재: 3,968명(5월 개관)



○ DMS 시설

소재지	마포구 상암동 DMC단지내 1.1Km
시설현황	IP Intelight 189본 전자배너 7조 14식 U-버스쉘터 4식, 상징조형물(밀레니엄EYE) 1 미디어조형물(THEY) 1 DMC통합운영센터 1식
준공일	'08.12.31



나. 위탁개요

- 위탁사무 : DMC 단지관리
- 위탁기간 : 2022.1.1. ~ 24.12.31.(3년)
- 위탁유형 : 자립형 민간위탁
- 위탁업무
 - 시설관리 : DMC첨단산업센터, 산학협력연구센터, DMC 홍보관, DMS시설 관리·운영(건물 등 관리, 입주기관 선정, 입주 및 퇴거 등)
 - 단지관리 : 미공급 용지 시설관리, 지정용도 준수 이행실태 조사
 - 기타 관련 사업의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
- 소요예산 : 해당없음(자립형 민간위탁)
 - ※ '20년 정산내역 : 수입 10,685백만원, 지출 13,790백만원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재계약

다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현황

- 민간위탁 추진근거
 - 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 제12조
 -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
 -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의3, 제23조의2
- 민간위탁 추진경위
 - DMC홍보관 : '04. 2. 1.~'11.12.31(매년 재계약, (재)서울산업진흥원)
 - 산학협력연구센터 : '06.10.01~'11.12.31(매년 재계약, (재)서울산업진흥원)
 - 단지 활성화 : '07.04.25~'11.12.31(매년 재계약, (재)서울산업진흥원)
 - 첨단산업센터 : '08.04.01~'11.12.31(매년 재계약, (재)서울산업진흥원)
 - DMS운영관리 : '09.01.01~'11.12.31(매년 재계약, (재)서울산업진흥원)
 - 통 합 위 탁 : '12.01.01~'21.12.31(10년 재계약 3회, (재)서울산업진흥원)
 - ※ '12년부터 종합적 단지관리를 위해 5개 사업을 통합 위탁
 - ※ '15년부터 '단지활성화' 사무는 서울산업진흥원 고유사무 전환

라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DMC는 서울 미래의 성장동력인 첨단 디지털 Media & Entertainment 집적단지로 구성되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이 입주하고 있는바, 이러한 중소기업 육성을 통하여 서울산업의 경쟁력을 꾸준히 제고하기 위해서는 단지 관리 및 중소기업 지원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 운영이 필요
- DMC선도시설(첨단산업센터, 산학협력연구센터)은 스마트 미디어를 포함한 4차산업 관련 유망 벤처·중소기업을 유치하고 기술지원을 통하여 강소기업으로 육성코자 하는 시설로서 단순한 건물 관리가 아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 지원 노하우가 요구되며
- DMS는 지능형 가로등(IP-Intelight), 상징조형물, 디지털 사이니지 등 첨단 시설물을 운영 관리하는 것으로 첨단 IT기기에 대한 전문성과 운용 및 유지관리 기술이 요구됨
- 市 직영 시에는 동일조건의 전문가를 선발하여 운영하여야 하는바, 이 경우 노하우를 축적할 때까지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환경변화에도 신속한 적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, 투자출연기관 고유사업으로 추진 시에는 노후된 시설의 인프라 개선 및 향후 4차산업분야 발전방향 설정 등 시의 지원정책적 결정을 반영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
- 따라서 2004년부터 DMC홍보관 시설 관리에 대한 위탁 운영을 시작으로 장기간 시설운영과 단지관리를 수행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,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력 및 인프라를 갖춘 (재)서울산업진흥원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
마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

-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수립('21.5.25.)
- 제5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'적정' 의결('21.7.22.~23.)
-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심의위원회 '적정' 의결('21.8.3.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」 제12조

제12조(입주자 지원 사업) ① 시장은 입주자를 위하여 창업지원, 기술개발 지원, 인력양성, 정보통신 기반구축 및 운영관리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거나 같은 목적을 가진 다른 법인에 출연할 수 있다.
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 및 설치된 시설 물의 관리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.

- 「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」 제5조

제5조(관리운영의 위탁등) ① 시장은 지원시설에 대한 관리·운영의 전문성 확보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리·운영 능력이 있는 다른 행정기관·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10. DMC(Digital Media City)첨단산업센터

- 「서울특별시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0조의3 및 제23조의2

제20조의3(산학연 협력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) ① 시장은 대학·연구기관 및 기업 등의 연구·개발의 상호 연계·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지원시설(이하 "지원시설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의 명칭 및 기능은 별표와 같다.

[별표]

산학연 협력지원시설(제20조의3제2항관련)

명 칭	기 능
DMC산학협력연구센터	산·학·연의 연구·개발·교육 및 그 지원활동

제23조의2(사무의 위탁) 시장은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력사업의 기획·평가 및 관리 등 그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산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.

○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및 제6조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6. 산업지원, 직업훈련,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에 관한 사무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(자립형 민간위탁)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○ 2021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제출

※ 작성자 : 미디어콘텐츠산업과 DMC팀 이민정 (☎ 2133-9215)